

지방세 공시송달

-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:
- 서류의 송달지:
- 서류의 명칭:
- 서류의 내용:

위의 서류를 년 월 일 귀하(귀 법인)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
_____하므로 (납부기한을 년 월 일로 변경하여) 「지방세기본법」
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.

년 월 일

발 신 명 의 직인

- 비고
- 같은 사람에 대하여 여러 건을 공고하거나 여러 명에 대하여 공고할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작성하여 공고하여도 무방함
 - 서류가 납세고지서, 독촉장 등일 경우에는 부과 연월일, 주요세목, 총 세액 등을 기재할 것
 - 납부기한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납부기한 등을 함께 기재할 것
 - 기간의 계산은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4일째 되는 날 24시까지임
 - 다음 각 목의 사항은 특수문자(*)로 변환하여 표기할 것. 이 경우 송달 대상자의 생년월일 등 추가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.
 - 가.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중 글자 1개(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의 글자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)
 - 나. 서류의 송달지 중 「도로명주소법」에 따른 건물번호 및 같은 법에 따른 상세주소
 - 송달 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해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유선을 통한 확인 방법을 안내할 것